

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[별표 1]

과 태 료 부 과 기 준

(단위: 만원)

처분대상	관계법조	법정 상한액	부과기준
1.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	○ 법 제68조제1항 · 법 제73조제4항	300	가. 매회: 300
2.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위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	○ 법 제68조제2항제1호 · 법 제29조제2항	100	가. 삭제 요청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: 50 나.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: 10
3.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	○ 법 제68조제2항제2호 · 법 제73조제4항	100	가. 당사자는 매회: 100 나. 관계인은 매회: 50